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6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410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62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소499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 선고 2020. 7. 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소49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대구 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다가 이를 '신암점'으로 하여 E에게 넘기고, 자신은 북구 F에서 'G 태전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 위 족발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었던 원고는 E의 소개로 2017. 7.경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한 달간 족발 조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 주고 20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제작하여 주며, 개업 후에도 15일 동안 피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원고는 'G' 상호 사용 및 위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족발 소스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소스는 본점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으라고 하였다.

레시피를 전수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한 달 동안 원고측에 가르쳐준 것은 족발삶기와 족발썰기밖에 없는데, 겨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이나 지급하기로 하였을 리 없다. 소스를 제외하면 'G'의 족발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만일 원고가 개업을 못하게 될 경우 피고는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레시피를 공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소스를 본점으로부터 계속 구매하여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업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소스 레시피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소스 레시피를 전수받지 아니한다면 1,000만 원이나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내용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스 레시피를 전수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개업하면 일정기간 피고가 제조한 소스를 실비로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고 'G'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는 E, H도 피고로부터 소스 레시피는 받은 적이 없고, 제조된 소스 자체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심 증인 I도 피고와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소스 레시피에 관하여는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일 피고가 소스 레시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하였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가맹금 반환사유로 정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맹사업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스의 레시피 공개 여부가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스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한 소스 자체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3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써 피고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또한 원고가 개업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업을 포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소스 레시피를 전수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피고의 소스 레시피 전수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무조건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개업하지 아니하여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위 1,000만 원 중 간판제작에 관한 부분인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예혁준

판사김대규

판사권준범